교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유치원 규칙(이하 '규칙'이라 한다)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교직원 보수규정

제 2조(기준봉급 및 수당의 지급기준)

① 교직원의 개인별 보수는 예산서상, 경력 및 능력, 동일 경력 수암유치원의 보수수준,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본원의 설립·경영자가 매년 정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보수의 월 지급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한다.

③ 교직원 봉급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지급되며 지급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.

④ 봉급 지급외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⑤ 각종 수당은 원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.

⑥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항으로 유치원에 학부모 교육비가 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는 본봉만 지급 될 수 있다.

<교직원 봉급 지급 기준>

연번	구분	직급	봉급지급기준	지급형태
1	교원	원장	설립자가 교육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2	교원	원감	설립자가 교육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3	교원	교사	교육경력에 따른 매년 호봉기준으로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4	직원	사무	사회경력 및 능력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5	직원	영양사	영양사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6	직원	조리사	조리사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7	직원	조리실무사	조리실무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8	직원	기사	통학차량운행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책정	연봉제(정규직)
9	직원	기타	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급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과의 연봉책정기준을 따름	연봉제(정규직)
10	직원	단시간	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능력에 따른 연봉책정	연봉계약제

<각종 수당의 내용 및 지급 기준>

구분	내용	지급 기준
교원처우개선비수당	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교원에 한하여 교육청에서 지급	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준함
초과근무수당	시간 외 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	급여의 100% 이내 책정
상여금	월, 분기, 학기별 성과급	성과에 따라 책정
자가운전보조비	매월	매월 20만원이하 책정